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7호 2020. 4. 20.(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공 고

-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4
○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9

회람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고시 제 2020-12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입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로 44-1	2020.4.20	신축으로 인한 건물멸실
2	전라남도 목포시 당가두로38번길 32	2020.4.20	신축으로 인한 건물멸실
3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82번길 27	2020.4.20	신축으로 인한 건물멸실

목포시 공고 제2020-625호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및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목 포 시 장**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 개정이유**

-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우리시 규칙에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개정된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 정비 (안 제17조)**

-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
-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6. 입법예고 : 2020. 4. 20. ~ 5. 11. (21일간, 초일 불산입)

7.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목포시장(참고 : 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 감사실, 전화문의 270-3257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규칙의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 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로, “미리” 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부강의등을” 을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u>외부강의등을</u>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시장에게 <u>미리</u>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 <u>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u> ----- ----- <u>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u> ----- ----- . ----- ----- ----- .
③ <u>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	<삭 제>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u>외부강의등이</u>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그 외부강의등을</u> 제한할 수 있다.	④ ----- ----- ----- ----- <u>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u>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목포시 공고 제2020-632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0.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목포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의견수렴(안 제6조)
 -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 개최
- 위원회 설치(안 제7조)
 - 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 평가 등을 수행
-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안 제15조)
 -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여 세부 운영사항을 정함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심의)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6. 예산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 2020. 4. 20. ~ 2020. 5. 11.(21일간)

8.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문화예술과)]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061-270-8429, FAX 270-3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목포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4항의 사항
2. 문화예술, 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구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목포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위원회 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법」 제21조 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역사·도시계획·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3.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